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기관	기관명	(기관명)	설립 연월일	
		(홈페이지)		
	대표자명 (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①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②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분야		[] 광학·전자영상장비 [] 화학물 전처리·분석장비 [] 물리적 측정장비 [] 그 밖의 연구장비(연구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산업진흥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기관의 정관 2.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3.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작성방법

1. ①의 “소재지” 란에는 신청기관의 주된 소재지(본사)를 작성합니다.
2. ②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분야” 는 신청기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할 연구장비의 유형(중복 가능)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